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6회 임시회

# 심사보고서



2022. 3.

복지문화위원회

# 목 차

1.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2
2. 대구광역시달서구 두류푸드마켓 재위탁 동의안	7
3. 대구광역시달서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4. 대구광역시달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14

#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 보고서

2022. 3. 16.
복지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발의자: 박왕규 의원 등 5명(배지훈, 홍복조, 원종진, 윤권근)
- 발의일자: 2022. 3. 4.(금)
- 회부일자: 2022. 3. 4.(금)
- 상정 및 의결: 제286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2022. 3. 16.)

## 2. 제정이유

- 대구광역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의 위대한 업적을 널리 알리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나. 역사문화인물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 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2022. 3. 4. ~ 2022. 3. 14)결과: 의견없음

## 5. 전문위원 겸토의견 요지

-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달서구가 낳은 역사문화인물의 선양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문화적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중앙정부는 정체성 확립과 역사·문화적 자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0년 7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인 재발견 운동의 하나로 이달의 문화인물을 선정해 각종 선양사업을 펼쳐 선현들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을 펼쳐왔음.
- 특히 지방자치와 더불어 지역의 역사·문화적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대구광역시는 2005년 대구문화인물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구문화인물을 선정하고, 현창사업위원회를 구성해 현창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 대구문화재단은 2016년 대구를 대표하는 근현대 문화예술인 12인을 선정하고, 매월 ‘이달의 문화인물’을 지정해 책자 및 홍보를 제작·배포하는 등 시민캠페인을 실시하였음. 또한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미 역사문화인물 선양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 1988년 5월 1일 자치구로 승격한 달서구는 1998년 진천동 입석 국가문화재 지정 및 선사유적공원 조성을 통해 대구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으며, 임진왜란 때 활약한 화원 우배선 장군과 월계 우승기 독립지사, 향산 윤상태 독립지사 등 많은 역사문화인물을 배출한 지역으로
-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서구를 빛낸 역사문화인물을 발굴하여 그 업적을 선양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자산을 확보하고, 달서구민의 지역정체성 확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달서구 역사문화인물은 주민의 지역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출생, 업적 및 행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한 올바른 역사적 평가와 지역주민의 일반적 평가에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업적에 대한 심의과정을 엄격하게 함으로써 달서구민이 동의할 수 있는 역사문화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하여 살펴보면

- 「대구광역시달서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 「대구광역시달서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창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반해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확립과 더불어 중요해지고 있는 지역 정체성 확립 및 지역사랑 고취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을 발굴하여 역사문화인물로 선정 함으로써 달서구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으로 그 제정목적이 서로 다르고
- 선정위원회에서 전문가 심의를 거쳐 달서구민이 인정하는 역사문화인물을 선정하도록 한 제정의도에 비추어 출생 혹은 활동영역 등 최소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더불어 달서구 역사문화인물 선정을 통해 달서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자산으로 확보함으로서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정책적 실효성 또한 높을 것으로 사료됨.

**6. 질의 · 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첨부서류:** 위원회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역사·문화·예술·체육 등”을 “역사·문화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1. “역사문화인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u>역사·문화·예술·체육 등</u>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2. (생략)	제2조(정의)  1. “역사문화인물”이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u>역사·문화 등</u> 사회 각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  2. (조례안과 같음)